

제 3 장 농 업

제 3.1 조 적용범위

1. 이 장은 농산물 무역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.¹⁾

2. 이에 더하여, 제3.2조는 상품이 농산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속서 2-나(관세 철폐)의 당사국 양허표의 부록 2-나-1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적용된다.

제 3.2 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

1. 각 당사국은 부속서 2-나(관세 철폐)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-나-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(관세율할당)을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수입 허가협정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한다.

2.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.

가.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, 공개되며, 시의적절하고, 비차별적이며, 시장조건에 반응하고,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,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.

나. 수입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어떠한 가공업자, 소매업자, 식당, 호텔,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기관, 또는 그 밖의 인도 쿼터 배분을 받도록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. 쿼터 배분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제한된다.

1)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3.1조는 부속서 2-나의 대한민국 양허표의 일반주해의 제3항타호를 조건으로 한다.

- 다. 부속서 2-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-나-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, 당사국은 쿼터의 어떠한 부분도 생산자단체에게 배분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로 한정하지 아니한다. 그리고
- 라. 당사국은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 수량으로,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쿼터를 배분한다. 부속서 2-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-나-1의 각 관세율할당 규정과 그 적용가능한 세번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각 쿼터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의 명세 또는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하며,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도된 최종 용도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
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적시한다.

4. 각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쿼터 물량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.

5.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율할당상의 쿼터 배분의 신청 또는 이용에 대하여 상품의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.

6.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.

7. 부속서 2-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-나-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각 당사국은 그 부록에 설정된 전체 쿼터 물량을 1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연도의 첫 번째 영업일에 시작하여, 쿼터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그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.

제 3.3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

1. 제2.3조(관세 철폐)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은, 어느 해의 그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3-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(발동수준)을 초과하는 경우에, 제2항 내지 제8항에 합치하게 부속서 3-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.

2. 제1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,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, 또는 부속서 3-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3.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3-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정해진다.

4.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.

가. 제10장(무역구제)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, 또는

나.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

5.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.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.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.

6. 공동위원회 또는 제3.4조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 무역 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과 운용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.

7.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,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.

가. 부속서 3-가의 당사국의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

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, 또는
나. 그 조치가 부속서 2-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-나-1에 규정된 관세율
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

8.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농산물은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
취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어떠한 관세의 적용대상도
되지 아니한다.

제 3.4 조 농산물 무역 위원회

1.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이내에,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
구성되는 농산물 무역 위원회를 설치한다.

2. 위원회는 다음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.

가.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고 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
나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, 소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
기관과 조율하여 이 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, 그리고
다. 공동위원회가 부여하는 모든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

3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
한다. 위원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국의 대표들이 주재한다.

제 3.5 조 정 의

이 장의 목적상,

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
관한 협정을 말한다. 그리고

농산물이라 함은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을 말한다.